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08. 16.
행 정 위 원 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8월 10일 강두석 의원 외 12인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년 8월 16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07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위원회(2004. 8. 1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류병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전년대비 최고 3배 이상 인상되어 주민들의 집단 조세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,
-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, 과다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25% 인하하여 주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공동주택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5% 경감함
- 표준세율 개정내용
 - 재산세 과세표준액 1,2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1,000분의 3”을 “1,000분의 2.25”로 인하
 - 재산세 과세표준액 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3만 6천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”를
“2만 7천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.75”로 인하
 - 재산세 과세표준액 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5만 6천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”을
“4만 2천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.5”로 인하
 - 재산세 과세표준액 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11만 6천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”을
“8만 7천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2.5”로 인하
 - 재산세 과세표준액 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35만 6천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”을
“26만 7천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7.5”로 인하
 - 재산세 과세표준액 4,000만원 초과인 경우
세율 “85만 6천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”을
“64만 2천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2.5”로 인하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

시장·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찬재)

- 본 개정조례안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의 주택 표준세율 25% 인하율은 과도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감소와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의 감소가 없는 적절한 인하율로 판단되며,
- 일부 타구에서도 2004년 인상된 재산세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소급 적용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구의 소급적용 또한 가능하다 판단되나 세무행정의 공신력, 법적 안정성, 소급 입법으로 인한 주민의 입장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